

중구정신건강증진센터 무상임대 계약서

중립종합복지센터 건물 내의 아래 표시 중구정신건강증진센터 시설(이하 “건물 등”이라 한다)에 대한 무상임대에 관하여 중구청장(이하“갑”이라 한다)과 서울대학교병원(이하“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계약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건물 등의 표시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6길 16 중립종합사회복지관 3층

규 모 : 중구정신건강증진센터 227.7㎡ (설계도면 별첨)

제1조 목 적

이 계약서는 건물의 무상임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구정신건강증진센터』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제2조 무상임대 계약

- ① 건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갑”에게 있으며 “갑”은 건물 등에 대한 사용권을 “을”에게 계약기간 동안 무상으로 임대한다.
- ② “갑”과“을”은 건물 등을 별첨 설계도면과 같이 무상임대하며 이 계약서에 서명 날인 함으로써 『중구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공간에 대하여 무상임대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사용기간

“을”의 건물 등의 무상임대 사용기간은 **2016.01.01 ~ 2016.12.31**로 하며, 필요 시 “갑”과 “을”의 협의 하에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용도제한

“을”은 무상임대 받은 『중구정신건강증진센터』 공간을 정신보건법 제13조(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 규정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유지관리 및 보수 의무

- ① “을”은 무상임대 계약 완료일 이후부터 건물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여야 하며 건물 등에 대한 유지, 관리 및 보수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② “을”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손, 손괴 등 관리부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은 이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을”이 건물 등의 설치, 관리 및 보존상의 부주의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6조 관리비 등의 납부의무

- ① “갑”은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기타 시설관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하 “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을”에게 고지한다. 이 경우 “을”은 매월 “갑”이 지정한 장소에 기한 내 납부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까지 납부할 수 있다.
- ② “을”이 관리비 등을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을”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연체료를 가산 납부한다.



제7조 시설의 이용

“을”은 건물 내 전기, 수도 등 부대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시설의 증설·원상 복구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을”이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 행위금지 등

- ① “을”은 “갑”의 건물관리에 저해되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물 내 복리시설 및 조정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건물 내에 구조물 또는 가설물 등을 설치 또는 제거하는 행위
 3. 건물 내에서 심한 소음이나 악취 등을 유발하는 행위
 4. 기타 건물 내 관리질서를 해하는 행위

제9조 운영 등

- ①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체결 후 『중구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

여야 한다.

- ② “을”은 『중구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를 센터장으로 지정 위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해제 또는 해지

- ① “갑”은 “을”이 사업목적 및 사업용도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 “갑”과 “을” 서로가 본 계약사항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 “을”은 건물 등을 “갑”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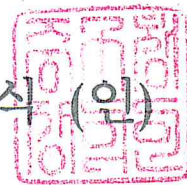
제11조 기타사항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2015. 12 . .

(이 계약서는 전문 및 본문 제1조에서 제 11조까지로 구성되었음)

“갑”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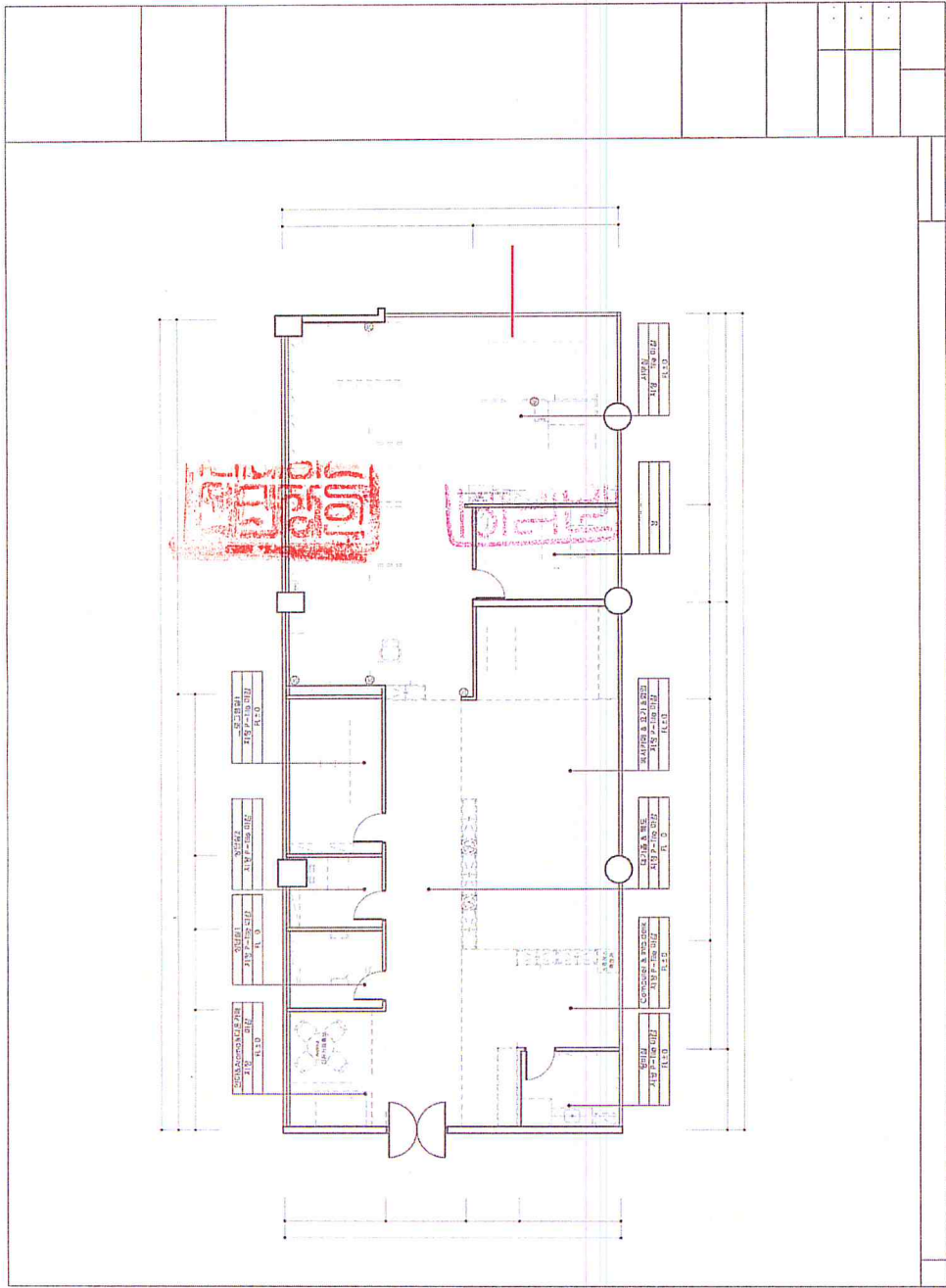


“을” 서울대학교병원장 오 병 희

대리인 김 봉 년



<별첨> 설계도면



이 문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청의 승인없이 수정 할 수 없습니다.